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2018. 7.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6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해당되는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원 1명
2. 직원 2명
3. 학생 1명
4.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명
5. 동문 또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명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제3조(운영)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심의회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5조(심의 및 의결)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경리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6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